

17세기 奴婢戶의 호적등재*

— 조선왕조 재정의 관점에서

孫炳圭**

I. 머리말

II. 노비호의 생성

III. 17세기 말의 노비호 등재

IV. 전망: 노비호 성립의 원인과 방향성

• 국문초록

奴婢가 호를 대표하는 奴婢戶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친 시기의 호적대장에 가장 많이 등재되었다. 본고는 1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호적등재 원칙의 관점에서 노비호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며, 17세기 말에 노비호가 대거 등재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론한다.

호를 단위로 하는 ‘稅役’의 부담을 책임지는 자로서, 호의 대표자는 ‘職役’을 가진 ‘良人’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17세기 초까지 호적에 사노비들로 구성된 호가 없지 않으나, 모두 ‘노비소유주+노비’의 형태로 등재되었다. 노비소유주가 그 호의 주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7세기 말의 호적대장에는 호의 대표자로서 사노비가 소유주의 앞에 기재되고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그러한 호는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러한 호의 사노비 소유주는 한 지역의 호적에 자신의 호와 함께 그의 노비들로 구성되는 복수의 호를 등재하고 있다.

17세기 말의 호적장부에는 가능한 한 많은 호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에 힘입어 등재되는 호구수가 증가하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그곳에 할당된 호구의 총수에 준하여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호를 단위로 하는 세역 부담이 분배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세역 부담을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노비호의 등재에 노비소유주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1720년경의 토지대장에도 필지마다 토지소유자로서 노비소유주와 노비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거나 노비명만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 재정의 관점에서 17세기의 노비호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주제어 : 호적, 노비호, 상전, 국역체제, 재정

I. 머리말

조선왕조 戶籍에는 私奴婢만으로 구성된 戶가 다수 존재한다. 고려시대 호적에 그러한 호의 존재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있으나, 조선시대 호적에서 노비가 호의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호를 등재하는 원칙—특히 稅役 징수와 관련한 조선시대 良賤制의 원칙—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¹⁾ 현존하는 가족과 인구 가운데 일부가 호구정책상의 목적에 의거하여 호적상의 ‘戶口’로 편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까 한다.²⁾ 稅役과 호구 편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호구가 戶役 및 職役 차정과 관련하여 구성되며, 그것은 均稅政策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제시한 연구, 호충은영과 관련하여 군역이 호에 분배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³⁾

일찍부터 호적 작성에는 호구성립의 원칙이 제시되어왔다. 『高麗史』食貨志 ‘戶口’ 조는 “國制에 백성의 나이 16세면 ‘丁’이 되어 ‘國役’을 지기 시작하고”⁴⁾라 하여 고려왕조가 호구조사를 하는 원칙으로 첫 문장을 시작한다. 이어서 “州郡은 매년

1) 고려시대 호적에서 노비호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이종서, 「高麗末 和寧府戶籍의 作成原則과 記載內容-同居狀況과의 關聯性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95, 진단학회, 2003, 55~80면 참조. 조선시대 호적의 사노비 기재에 대해서는 ‘외거’하는 노비를 다룬 김건태, 「朝鮮後期 私奴婢 파악방식」, 『歷史學報』 181, 역사학회, 2004, 99~130면이 참고된다. 조선시대 호적에 사노비가 호를 구성하여 등재되고 그것에 노비소유자인 상전이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손병규, 「17·18세기 호적대장의 私奴婢 기재 실태-경상도 단성현 권대유家 노비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275~308면 참조. 또한 사노에게 군역이 부과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일찍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손병규,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파악과 운영」, 『韓國史學報』 13, 고려사학회, 2002, 383~420면 참조.

2)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137~170면; 「조선후기 호적 ‘戶’의 編制와 성격-(제주 대정현 하모슬피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227~262면; 김건태, 「朝鮮後期 戶의 構造와 戶政運營-丹城戶籍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217~262면.

3) 김건태, 「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 戶籍大帳의 編制方式」,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171~208면;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의 성격」, 『韓國史研究』 132, 한국사연구회, 2006, 137~177면; 송양섭, 「19세기 유학호의 구조와 성격-『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119~162면.

4) 『高麗史』食貨志 戶口,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

인구를 헤아려 호적에 등재하고 ‘戶部’에 바쳐서 모든 ‘徵兵’과 ‘調役’을 호적으로 抄定하”⁵⁾는 것이 호적을 작성하는 주된 목적임을 밝힌다. 중앙재무기관인 ‘호부’가 군역과 ‘조역’—즉 호를 단위로 하는 貢納·徭役 등의 勞役—을 위시한 ‘국역’을 지방정부가 작성한 호적에 근거하여 선정,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高麗史』 食貨志 田制에는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군역이 부과되지 않은 자는 “호를 세워서 군역에 충당(立戶充役)”⁶⁾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호를 세워 ‘국역’을 지는 ‘丁’은 ‘良人’에 한정되며, 조선시대 ‘良賤制’ 하에서도 그것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역징수와 관련하여 고려나 조선의 호적 작성에서 호의 대표자는 ‘직역’을 가진 양인으로 세울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⁷⁾ 조선시대 중앙정부에 보고되는 군현 차원의 호구조사가 해당 호의 토지소유나 지세 납부 상황과 함께 파악되지는 않은 듯하나,⁸⁾ 호적장부가 호를 단위로 하는 稅役-‘國役’의 징수에 근거가 된 것은 분명하다.

5) 『高麗史』 食貨志 戶口, “州郡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

6) 고려왕조의 토지조사는 백성에게 일정규모의 토지(田丁)를 分給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職役에 따라서 고르게 지급하여 백성의 생활에 바탕이 되고 국가재정(國用)을 지출하도록 했다. 만약 주인 없는 토지는 전국의 군역예비군(軍閑人)에게 지급하여 호를 세워 국역에 충당토록 했다(『高麗史』 食貨志 田制 經理, “先王制定内外田丁, 各隨職役平均分給, 以資民生又支國用. …… 如無主者, 其給内外軍閑人, 立戶充役.”). 고려시대 토지와 군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국, 「高麗時代 軍役差定과 軍人田」, 『한국중세사연구』 15, 한국중세사학회, 2003, 245~277면; 「고려후기 ‘本主’의 의미와 立戶充役」,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73~104면 참조.

7) 김건태, 앞의 2006 논문, 137~177면. 이와 관련하여 호적작성에 반영되는 조선왕조 ‘국역징수체제’는 ‘良賤制’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국역징수체제는 모든 민을 ‘身役’ 대상자로 삼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건실한’ 자를 ‘良人’으로 삼아 중앙 국가권력기관의 관리하에 두어 ‘국역’을 징수하는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능력이 낮은 자는 ‘奴婢’로 삼아 상전에게 귀속시켜 ‘身貢’을 납부토록 한다. 개별적인 국가기관에 귀속되는 노비를 ‘公賤’, 개인에게 귀속되는 노비를 ‘私賤’이라 한다. 국가는 민의 일부를 파악하여 국역징수체제에 편입시키고 일부는 개별 국가기관이나 국역자의 관리하에 두어 국역체제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양천’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신분을 계승하여 결정된다는 원칙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역징수상의 필요와 그에 응하는 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여지도 있다.

8) 중국 고대의 호적에는 해당 호의 토지나 토지세 기록이 병기된 사례가 많으며, 신라시대 촌락문서에도 일정 지역 전체의 호구통계와 함께 토지의 총액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호구와 토지가 재원의 근거로서 양자가 합치하는 일원적 파악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선왕조의 호적에는 호를 대표하는 자의 위치에 노비가 등재되기도 했다. 호적에 노비만으로 구성되는 호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을까? 호적대장에 독립된 하나의 호로 등재된다는 것은 그 호의 대표자 ‘主戶’가 군역이나 戶役과 같은 ‘국역’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호적대장에는 해당 지역에 할당된 그러한 역부담의 총액을 분담할 호들만을 선별적으로 등재하면 되었다.⁹⁾ 여기에 경제적 능력이 낮다고 여겨지는 노비들만으로 호를 편성하여 ‘戶口總數’를 채우는 호적작성은 당시 호구정책=‘戶政’의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었을 것이다.¹⁰⁾ 본고는 17세기 말의 호적에 노비가 기재형식상 버젓한 주호로 등재되어 ‘노비호’를 성립시키기에 이르는 과정을 ‘立戶’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더듬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 재정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정당화가 부정되고 애초의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이미 당시의 호적작성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¹⁾

고려왕조의 ‘立戶充役’은 토지조사—왕토를 백성에게 분급하는 형태를 띠지만—와 연계하여 ‘無主’의 토지에 ‘田主’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¹²⁾ 1720년경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庚子量田’으로 작성된 ‘量案’에는 ‘전주’로 노비명을 다수 발견하게 되는데, 실제 토지소유자가 해당 노비의 上典임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¹³⁾ 노비명을 포함하는 ‘전주’의 이름을 개별 필지마다 붙여진 소위 ‘戶名’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¹⁴⁾ 17세기 호적에 등재된 ‘노비호’의 등재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9) 손병규, 「18세기 말의 지역별 ‘戶口總數’, 그 통계적 함의」, 『사림』 38, 수선사학회, 2011, 39~70면; 정진영, 앞의 2003 논문, 137~170면; 김건태, 앞의 2006 논문, 137~177면; 앞의 2002 논문, 217~262면.

10) ‘사노군역자’에 대한 연구는 원칙적으로 군역이 부과되지 않는 사노의 일부가 지방군사기관에 소속된 지방군역자나 군현에 소속된 ‘邑所屬’로 차정되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손병규, 앞의 2002 논문, 383~420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친 군역운영은 중앙군역자와 일부 지방군역자를 양인으로 확보하는 한편, 이들 지방군역의 총액(軍總)과 지방재정상의 수요를 노비로부터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노군역자의 호적등재가 가능했던 것은 사노로서는 상전에 대한 신공납부를 면할 수 있고 상전은 자신의 군역부담을 노비 이름으로 수행(奴名出布)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노명출포에 대해서는 송양섭, 앞의 2004 논문 참조.

11)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주로 17세기 경상도 단성호적의 호구등재를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17세기 말의 경상도는 大同法 실시(1677년), 五家作統法 재천명(1675년), 良人軍役者 收括이라는 변혁적인 재정, 호구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12) 앞의 주6) 참조.

13) 이영훈, 「量案의 性格에 관한 再檢討—慶尙道 醴泉郡 庚子量案의 事例 分析」, 『경제사학』 8, 한국경제사학회, 1984, 1~59면.

조선왕조는 재원의 근거로서 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각각 별도로 진행시켰지만,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일관된 운영원리가 관철되고 있었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관련한 차후의 연구를 위해서도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노비호의 생성

1. 복수의 노비가족이 등재된 호

고려시대에 직역자를 호의 대표자로 하여 호를 세우는 원칙이 제시된 만큼, 당시의 호적으로부터 그 원칙의 관철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소위 ‘李成桂戶籍’이라 불리는 ‘和寧府戶籍’(1390년)에서 노비호 창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¹⁵⁾ 이 이외의 현존하는 고려시대 다른 호적에서 노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양인 가족이나 그 친인척이 부모의 계보적 정보를 병기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현존할 뿐이다. 그러나 화령부호적은 고려말~조선초의 호구단자나 준호구 형태로 현존하는 호적과 달리 여러 호를 모은 ‘成冊’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노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내린 식읍 實封의 호를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¹⁶⁾

화령부호적의 첫 번째 쪽에 호구성원으로 노비들만 확인되는 호가 하나 존재하며, 세 번째 쪽에는 자료의 현존상태상 기록이 결락되어 호의 전체형태를 알기 어려운 4호를 제외하고 호 전체가 온전한 11호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당호의 노비 부부나 가족들이 등재된 형태의 호만 모아놓았다. ‘화령부호적’ 세 번째 쪽에 호전체가 온전하게 등재된 첫 번째 호를 보기로 하자.

14) 김진태,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韓國史研究』 144, 韓國史研究會, 2009, 210~238면.

15) 和寧府戶籍은 盧明鎬 등 저,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2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에 수록. 화령부호적의 작성원리와 노비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종서, 앞의 2003 논문 참조.

16) 『太祖實錄』 1책1권 총서, “恭讓告孝思觀, 賜九功臣錄券. 以太祖爲奮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 爵和寧君開國忠義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田二百結, 奴婢二十口. 其錄券依開國功臣裴玄慶例, 稱中興功臣, 父母妻封爵. ……”. 노비가족들이 등재된 3번째 쪽만으로 노비는 40구를 넘는다.

A: 戶, 前判事朴忠用 戶奴 金上尤 年44, 妻 宰臣高閑 戶婢 甘勿伊 年42,
 同戶戶別奴 金元 年42, 妻 宰臣金元 戶婢 好奇 年42,
 同戶戶別奴 加伊 年27, 妻 同戶戶婢 訥斤伊 年20

이 호는 전판사 박충용의 호에 귀속된 노 김상우와 노 김원 각각의 부부, 마찬가지로 박충용의 호에 귀속된 노 가이, 비 늘근이 부부를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同戶戶別戶’ ‘同戶戶婢’의 ‘同戶’는 김상우의 상전인 박충용의 호를 말한다. 세 노비 부부가 각각 독립된 가족을 이루면서 한 호에 함께 등재된 셈이다. 더구나 노비가족들의 대표적인 노 김상우와 노 김원 각각의 처는 남편과 다른 호에 귀속되어 있다.

한편, ‘화령부호적’ 자료의 네 번째 쪽에서 여덟 번째 쪽까지는 모두 25호가 확인되는데, 위의 호구성 형태와 달리, 주호는 모두 직역을 가진 현존하는 자들이다. 이들 호에는 주호의 가족, 친인척이 등재된다. 정상적인 양인 직역자의 호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상전이 주호로 현존하는 戶의 안에 노비가 개인적으로 등재된 사례를 4호 찾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B: “戶妻矣母邊傳來已知婢矣 所生 婢 加叱加矣 所生 婢 四桂 年4”(제4쪽 3번째 호)
 C: “戶妻邊傳得故今之婢矣 所生 奴 巨乙金 年15”(제4쪽 5번째 호)
 D: “戶父邊傳來奴 金三 年50, 所生 婢 金德 年23”(제6쪽 1번째 호)
 E: “戶妻父邊奴 蒙古大 年45, 所生 奴 上尤 年□□, 所生 婢 □□ 年17”(제7쪽 1번째 호)

이 사례들은 노비귀속이 분명하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두 주호의父나 처의 부모, 처와 같은 주호 부부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노비귀속의 연원을 밝히는 식으로 기록되었다. D와 E 사례는 여기에 더해 父—子女로 구성되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개별 노비의 출생관계(‘所生’)를 주목하는 기록으로 되어있다. 해당 호에 귀속하게 된 연원과 소생 관계를 밝혀서 이들 노비에 대한 귀속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화령부호적 자료의 4~8번째 쪽에 기재된 호들 가운데 이 4사례 이외에 주호가 현존하는 호들은 노비를 전혀 등재하지 않았다. 이들 노비 이외의 노비와 이 호에 귀속되지 않는 노비가족—‘노처’나 ‘비부’ 등—구성원도 다수 존재했을 것이나,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호적상의 하나의 호에는 호 대표자인 ‘주호’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처 및 자녀와 그것을 넘어서는 친인척이 등재된다. 나아가 奴婢나 雇工 등—保人도 해당된다—도 각각 개인의 자격으로, 주호와 개별적인 관계로 기재될 뿐이다.¹⁷⁾ 그런데 사례 A를 비롯한 12호는 호내에 잠재하던 노비들이 기존의 주호가 해당 지역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혹은 소가족—단위로 호적에 표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노비 가족이 기재된 이러한 형태의 호를 바로 ‘노비호’라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 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맨 앞에 기재된 노비라기보다 여전히 그 노비의 상전인 박충용이 아닐까 여겨지기 때문이다. 호적이 등재되는 당시로서는 그 주호가 부재한 채로, 그 호에 귀속되지 않는 노비들을 포함하여, 노비들이 부부—소가족 단위—형태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노비가족들이 한 호에 등재된 경우는 이로부터 200여년 후, 1606년에 작성된 『慶尙道山陰帳籍』에서도 다수 발견된다.¹⁸⁾ 산음의 任縣—屬縣—으로 있는 丹城지역에는 6개리 전체 219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호의 첫머리에 私賤—사노비—가 오는 경우는 奴 21호, 婢 1호로 모두 22호인데—寺奴婢, 官奴婢 등의 公賤인 경우는 奴 10호, 婢 4호로 모두 14호이다—, 그중에 한 호에 서로 다른 노비가족이 존재하는 호는 사노가 호 첫머리에 오는 9호(元堂里 20, 21, 30번째, 元縣里 36번째, 北洞里 26번째, 都生里 30, 35, 47번째, 新燈里 24번째), 사비가 호 첫머리에 오는 1호(元縣里 47번째)가 확인된다. 특징적인 몇 개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F: [元堂里20] 戶, 京居靈光郡守朴鼎賢 奴 春京 年43 甲子生…(부모생략)…, 妻 班婢 訥春 年27 庚辰生…(부모생략)…,
班奴 金石 年34 癸酉生…(부모생략)…, 妻 班婢 春伊 年38 己巳生…(이하생략)…,

17) 고려와 조선의 법전에서도 호구성원의 범위를 주호와 개별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호적상의 호가 ‘가족’ 단위로 파악되는 것이라 할 때, 호는 비혈연관계와 신분적 지배예속관계에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가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家父長制’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가장’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는다(吉田滋一, 「中國家父長制論批判序說」, 『中國專制國家社會統合—中國史像再構成 II』, 中國史研究會編, 文理閣, 1990 참조). 호적의 호에 부자관계를 넘어서는 구성원이 포함되며, 그들에게는 호의 대표자인 주호가 ‘아버지에 준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호적은 ‘가부장제적 호’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慶尙道山陰帳籍』, 1606년/1630년 식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班奴 從介 年46 辛酉生…(부모생략)…, 妻 李貞立 婢 春介 年36 辛未生…(이하 생략)…

G: [元堂里30] 戶, 縣居權氏 奴 金良 年36 辛未生…(부모생략)…, 妻 班婢 靛介 年36 辛未生…(부모생략)…,
 奴 丁同 年36 辛未生…(부모생략)…, 妻 班婢 春月 年40 丁卯生…(부모생략)…,
 奴 莫乞 年34 癸酉生…(부모생략)…,
 奴 莫斤 年31 丙子生…(부모생략)… 逃亡…(이하생략)…

H: [元縣里47] 戶, 故李增 墓直婢 吾非 年43, 甲子生…(부모생략)…, 率女 故李增 墓直婢 禾代 年6 辛丑生, 率女 故李增 墓直婢 禾德 年4, 癸卯生
 奴 春口 年35 壬申生 逃亡…(부모생략)…,
 婢 山梅 年37 庚午生 逃亡…(부모생략)…

元堂里 20번째 호(F)는 서울 호적에 거주하는 박정현의 노 춘경과 그의 처 감춘 부부 이외에 노 김석과 비 춘이 부부, 노 종개와 비 춘개 부부 등 여러 노비가족과 함께 하나의 호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班奴’ ‘班婢’의 ‘班’은 화령부호적에서 ‘同戶’와 같이, 앞의 노비의 상전과 동일 상전에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상전이 같거나 다른 복수의 노비부부가 병존하는 호의 형태는 해당지역 단성에 주호가 부재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元堂里 30번째 호(G)의 경우는 단성현에 거주하는 권씨의 노 금량과 동일 상전에 귀속되어 있는 처 곳개 부부와 노 정동과 비 춘월 부부, 그리고 처가 기재되지 않은 노들이 병기된 호이다. 이 사노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이 호는 상전이 단성현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례이기는 하나 이 상전 ‘권씨’도 당시 단성의 호적에서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을 여윈 미망인이 호를 유지하다가 그녀마저 호적에서 내려옴으로써 한 호에 여러 노비가족을 기재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元縣里 47번째 호(H)도 상전이 단성에 거주했는지 모르지만, 상전 이증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 오비와 그녀의 두 딸이 모두 묘직비로 기재된 이외에 비록 ‘도망’으로 호적에서 제외되었지만 별도의 노비가족이다.¹⁹⁾ 상전이 사망했음을 밝히는 사례는 北洞里 26번째 호에서도 보인다. “戶, 故河汝漑 奴 介石 年53 甲寅生”으로

시작되는 호로, 이하 노 개석의 가족구성원 3명과 함께 그의 노비가 아닌 비혈연의 구성원으로 “婢 養春”이 병기되어 있다. 이 상전도 단성에 거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상전이 호적상에서 사라지지만 그의 노비들로 구성된 호가 이 식년에 존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호에 여러 노비가족들이 병존하는 이런 유형의 호는 첫 번째 노비의 상전이 모두 서울등의 타지에 거주하거나 단성호적에서 사라진 경우이다. 이러한 호에 노비가 호의 대표자라면 양인 직역자를 주호로 하는 ‘立戶充役’의 원칙과는 괴리된 등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비명 앞에 양인 직역자인 상전을 명기함으로써 그러한 괴리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호는 고려말의 화령부호적에서부터 존재했으며, 17세기 초까지도 존속되었다. 그런데 17세기 말 이후의 호적대장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노비가 기재되는 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²⁰⁾

2. 하나의 노비가족으로 구성된 호

1606년 호적에는 위와 같이 여러 노비가족이 한 호에 기재되는 사례만이 아니라 하나의 노비가족—부부, 단독기재를 포함하여—으로 구성된 호들도 다수 나타난다. 노비가족의 남편이 사노인 경우는 12호인데, 그 가운데 사노와 사비 부부는 8호, 사노와 양녀 부부는 3호, 사노 단독으로 구성된 1호가 그것이다. 특징적인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都生里10] 戶, 羅州居金光遠 奴 松斤 年35 壬申生…(부모생략)… 妻 私婢 荇 介 年33 甲戌生…(부모생략)…

J: [北洞里29] 戶, 晉州居正兵秋里 戶奴 龍伊 年44 癸亥生…(부모생략)… 妻 俞欣 戶婢 介月 年41 丙寅生…(부모생략)…

19) 여기서 ‘도망’이란 현실적으로 ‘상전과의 귀속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차후에 귀속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남긴 의도가 있다.

20) 1678년 단성현호적대장에는 비혈연의 노비가족과 병기된 호로 원당면 사월의 사비 매금의 1호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K: [北洞里28] 戶, 晉州居李秋里 戶奴 風同 年43 甲子生…(부모생략)…, 妻 良女
後代 年41 丙寅生…(부모생략)…

都生里 10번째 호(I)와 北洞里 29번째 호(J)는 사노와 사비 부부만 등재된 호이다. 주호 위치에 기재된 사노들은 각각 나주와 진주에 거주하는 상전을 두고 있다. 전자의 처는 귀속처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후자의 처는 도생리 3번째 호의 주호 正兵 俞欣에 귀속된 호비이다. 주호 유흔은 자신에게 귀속된 비 介月을 진주에 거주하는 정병 이추리의 호노가 있는 호에 그의 처로 등재시켰다. 도생리 4번째 호의 주호 軍資監奉事 梁健도 자신에게 귀속된 비를 같은 도생리 11번째 호에 京居 口克誠의 노 玆明의 처로 등재케 하고, 13번째 호에도 京畿居 姜文佑의 노 鄭文의 처로 등재토록 했다. 처의 상전은 단성에 거주하여 자신의 호를 성립시키고 있으므로 남편인 노의 상전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비가족만으로 호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北洞里 28번째 호(K)는 晉州에 거주하는 李秋里戶의 노 風同과 ‘良女’를 처로 두고 있는 호이다. 노 풍동의 상전은 위의 北洞里 29번째 호(J)에 주호 위치에 있는 노 龍伊의 상전과 동일인물이다. 秋里는 자신의 사노 두 명의 부부를 하나의 호에 함께 등재하지 않고 각각 북동리 두 개의 호에 나란히 남겨두었던 것이다. 상전이 실질적인 주호라고 한다면, 동일 상전이 복수의 호의 맨 앞자리에 등장하는 것은 복수의 호에 같은 주호가 등재되는 것이 되고 만다. 상전이 단성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이 한 사례밖에 없는데, 17세기 말에 노비가 호의 독립된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사노비만으로 구성되는 호는 노비가족의 대표적인 ‘首奴’의 상전이 해당지역 호적 등재자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했다.²¹⁾ 하지만 노처는 신분이 다를 수 있고 상전이 동일지역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었다. 俞欣과 梁健은 도생리에 각각 자신들이 주호로 있는 호를 세우고 노비를 기재하고 있다. 1606년 호적의 노비 상전들은 자신이 주호로 있는 호에 다수의 노비들을 함께 기재했는데, 앞의 ‘화령부호적’처럼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특정의 노비만 한둘 병기하는 것과는

21) 상전이 서원인 경우에도 院奴들로 호를 구성하는데, 이때에 호의 맨 앞에 등재되는 자를 ‘首奴’라 칭하고 있다. 손병규, 「조선후기 경주옥산서원의 노비경영」, 泰東古典研究 17,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00, 89~118면 참조.

다르다. 여기에는 노비 개개인이 호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주호와의 개별적인 관계로 기재되었다.²²⁾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호에 노비를 등재할 뿐 아니라, 상전이 다른 별도의 호에도 등재를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L: [都生里5] 戶, 正兵 梁鎭 年46 辛酉生 本南原…(사조생략)…,
 奴 應難 年27 庚辰生…(부모생략)… 妻 良女 九月 年35 壬申生…(부모생략)…

반면에 도생리 5번째 정병 梁鎭의 호(L)에는 귀속 노 응란과 함께 그의 처 양녀 구월이 기재되어 있다. 양녀 구월은 ‘奴妻’로서 양진에게 귀속된 노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俞欣과 梁健의 사례와 달리, 양진은 이들을 별도의 호로 독립시키지 않았다. 이 노비부부를 독립호로 세우게 되면, 주호의 위치에 있는 노의 상전이 단성에 자신의 호를 세우고 있는 자가 된다. 즉, 양진이 주호로 있는 호 이외에도 동일지역에 복수의 호를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俞欣과 梁健의 사례는 그들의 노비가 주호의 위치가 아니라 상전이 다른 노의 호에 노처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1606년 단성호적에 주호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노를 주호 위치에 등재하여 별도의 호에 독립시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노비부부만으로 구성되거나 노비 1인만으로 구성된²³⁾ 호는 그 호의 주호 위치에 상전이 단성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노비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한 경우에 호를 단위로 하는 稅役 부담은 주호를 대신해서 노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신에 상전이 단성으로부터 멀리 거주하기 때문에 상전에 대한 仰役이나 身貢 납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또한 이것은 단성내의 ‘戶總’을 확보하기 위한 편호과정에서 우선순위가 고려된 결과이기도 하다.²⁴⁾ 후술하듯이 17세기 초의 이러한 원칙을 깨고 단성호적에 주호로

22) [都生里3] 戶, 正兵 俞欣 年62 乙巳生 本清州…(사조생략)… 婢 軟伊 年40 丁卯生…(부모생략)… 婢 介今 年41 丙寅生…(부모생략)…; [都生里4] 戶, 軍資監奉事 梁健 年56 辛亥生 本南原…(사조생략)… 奴 金福 年40 丁卯生…(부모생략)… 婢 叔口 年50 丁巳生…(부모생략)… 婢 春介 年37 庚午生…(부모생략)… 逃亡, 奴 守哲 年35 壬申生…(부모생략)… 逃亡.

23) 元縣里 6번째 호는 大丘 거주 郭謙의 노 永春이 혼자 기재되어 있는 호이다.

24) 1630년 산음현의 호적대장에는 1030여호가 기재되는데, 주호가 故(사망), 도망, 이거 등으로 기재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있거나 노비가족만으로 재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170호나 존재한다. 1606년 산음지역의 600여호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3호에 지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등재된 자가 자신의 노비를 단성내에 주호로 독립시키는 사례는 17세기 말의 단성호적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호적상 호구의 확보를 중용받은 결과의 하나이다. 이에 조응하여 단성호적에 등재된 상전들이 호총 충당에 기여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노비호의 생성에는 公賤과 私賤에게 차별적인 과정이 존재했다. 공천은 중앙 기관에 소속된 寺奴婢, 內奴婢 등과 지방관청에 소속된 官奴婢, 향교의 校奴婢, 서원의 院奴婢 등이 있다. 이들 공천에게는 개별 국가기관이 상전이 되는 셈이므로 국가재정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직접적인 징수대상이 된다. 1606년 단성호적에는 주호가 공노비인 14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군역자와 같이 소속처가 분명하나 이미 독자적인 주호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노의 처가 공비인 경우는 읍치가 있는 元縣里 5번째 호 1호에 지나지 않는다. 內資寺奴 希孫과 掌隸院婢 莫德 부부로 이루어진 호이다. 또한 공노와 사비 부부로 이루어진 호, 공노와 양녀 부부로 이루어진 호가 각각 3호씩이다.

M: [元縣里15] 戶, 官奴 尙伊 年55 壬子生…(부모생략)… 妻 金貴業 婢 甸梅 年42 乙丑生…(부모생략)…
奴 亡西里 年35 壬申生…(부모생략)… 婢 明月 年30 丁丑生…(부모생략)…

N: [元縣里37] 戶, 司膳寺奴 億介 年45 壬戌生…(부모생략)… 妻 梁召史 年34 癸酉生, 子 奴 李世 年7 庚子生…(부모생략)…
奴 金軒 年47 庚申生…(부모생략)…

O: [元縣里51] 戶, 官婢 玉梅 年44 癸亥生 父百姓田萬 母官婢 山好

원현리 15번째 호(M)는 관노와 사비 부부의 호인데 이 호에 귀속된 率下의 노비도 2명 존재한다. 공천도 사천과 같이 四祖를 기재하지 않고 父母만 기재했다. 이 관노의 처는 원당리에 주호로 등재되어 있는 軍資監僉正 金貴業의 사비이다. 김귀업호에는

17세기 말 이후의 호적대장에는 이러한 호를 찾기 어렵다. 17세기 초의 20여년간 산음현에는 1.5배 정도의 호수 증가가 요구되었으며, 호수를 채우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호적대장에 남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8명의 노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外居하는 비도 존재한 것이다. 원현리 37번째 호(N)는 공비와 양녀 부부의 사례이다. 7세인 아들의 신분이 ‘奴’로만 되어 있지만 공천일 것으로 보인다.²⁵⁾

주호가 공노비로서 배우자가 불분명한 사례가 7호 발견된다. 그러한 7사례 가운데 4호가 공노비 1인만 등재된 단독호이다. 모두 元縣里에 세운 지방관아 귀속의 官奴 2호, 官婢 2호이다. 元縣里 51번째 호(O)는 官婢 玉梅가 홀로 존재하는 단독호이다. 공천은 여성이라도 주호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이 주목된다. 특히 관노비 독호 3호는 元縣里 마지막 순번인 49~51번째에 몰아서 등재했다. 관노비 1명씩으로 호를 세워 원현리에 할당된 호총을 충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606년 단성호적에 양인의 처가 공사천인 경우는 각각 서너 사례 확인되는데, 처가 공사천이라 하더라도 주호가 양인이면 호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 공천도 양인과 같이 주호로 성립될 수 있었다. 단지 17세기 초까지 사노비 가족으로 이루어진 호는 호의 맨 앞에 등재되는 노비의 상전이 동일지역의 별도의 주호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말의 호적대장에는 그러한 원칙이 파기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둘 점은 노비가족들로 호를 구성할 때에 노비귀속이 문제시된다는 것이다. 노비는 개개인이 上典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奴妻’나 ‘婢夫’와 같이 하나의 호에 귀속관계가 다른 자들이 등재될 수 있다. 더구나 독립호를 구성할 때에는 ‘戶奴’ ‘戶婢’라는 식으로 상전 개인이 아니라 상전‘호’에 귀속된다는 기재방식도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귀속과 신분이 다르지만 독립된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노비가족으로 호를 구성할 때, 특히 호를 단위로 하는 세역의 부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호적 작성 당국은 노비를 주호에 일원적으로 귀속시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노비부부의 신분과 귀속이 개별적이고 노비의 혼인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있었던 것이다.

25) 1730년경에 ‘良妻所生從母法’이 공표되기 전까지 노비 소생의 신분은 ‘一賤則賤’의 원칙에 근거하고 어머니가 비일 경우에만 종모법에 따라 어머니의 상전에 귀속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부모의 어느쪽이 공천의 경우에는 그 소생은 공천이 된다. 국가기관 귀속이 우선시된 것이다.

Ⅲ. 17세기 말의 노비호 등재

1. 노비와 상전의 기재 방식 변화

17세기 초까지 사노비가 주호로 확정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7세기 말의 단성호적에는 사노비가 엄연한 주호로 확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전의 기재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 노비가족으로 구성되는 호는 이전까지 ‘상전[거주지-직역-성명] + 노비[성명 및 나이]’ 형식으로 기재되었지만, 17세기 말의 호적에는 ‘노비[성명 및 나이] + “主” + 상전[거주지-직역-성명]’의 형태로 바뀌었다. 17세기 초 호적의 호의 선두에 기재되던 노비의 상전 정보가 뒤로 물러남으로써, 호적등재상 사노비가 주호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양인호의 양인 직역자와 같이 사노가 균역을 기재할 수도 있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주목되는 것은 노비호 주호의 상전이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대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²⁶⁾

조정은 17세기 말 이후의 良役政策 실시에 대비하여 1675년에 ‘五家作統制’를 재천명하면서 호구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²⁷⁾ 단성현에 거주하는 사노비의 상전들은 호적상에 호구수의 증가를 도모하여 자신의 노비로 별도의 호를 세움으로써 그에 대해 즉시 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식으로 ‘노비호’가 생성되었는지, 우선 1678년 ‘단성현호적대장’ 첫 번째로 등재된 元堂面 蛇山里에서 1통1호~3호, 2통4호를 들어 노비호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자(밑줄은 필자). 17세기 말의 노비호 사례분석 대상은 단성현호적대장의 첫 번째 행정면으로 기재된 元堂面に 그친다.²⁸⁾

26) 1630년 산음현 호적대장에는 주호 위치에 상전+노비명의 형태로 기재되지 않고 노비명이 먼저 나오고 뒤에 ‘主’+상전의 형태로 기재되거나, 상전을 명기하지 않고 ‘私奴’라고만 기재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독립호로 성립되면서 상전과의 관련성이 부차적인 기재요소가 되어간 것이다. 17세기말 이후의 노비 주호는 모두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戶籍事目』에는 상전의 기재가 강요되지는 않았다(井上和枝, 「李朝後期慶尙道丹城縣의 社會變動—學習院大學藏丹城縣戶籍大帳研究」, 『學習院史學』 23, 學習院大學, 1985 참조).

27)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軍史』 39, 국방군사연구소, 1999, 95~134면.

28) 노비호 등재의 새로운 사례가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는가를 사노비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데에는 外村인 원당면만을 분석대상으로 해도 충분하다. 단지 읍치가 있는 성내면에는 향리와 공천이 집중적으로 등재되어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나머지 외촌의 행정면들은 원당면과 대동소이한 현상을 보인다.

P: [蛇山里1-1] 第1戶, 私奴 □□ 年38 辛巳 主縣居李旻 父卜男 母班婢亂玉, 妻 班婢 玉女 年□□ 丙戌 父□□ 母班婢得介, 率子 金元 居昌邢景商戶去 次女 金女 年6 癸丑, □□□□ 年4 乙卯, 戊午自首

Q: [蛇山里1-2] 第2戶, 私婢 亂玉 年58 辛酉 主縣居李旻 父苐卜 母班婢芑德, 率子 一上 年40 己卯, 乙卯戶口相準,
加現, 婦 班婢 應春 年43 丙子 父不知 母班婢應玉, 率孫女 三月 年5 甲寅, 戊午自首

R: [蛇山里2-1] 第1加戶, 私奴 永達 年38 辛巳 主晉州居幼學趙錫圭 …(부모생략)… 妻 私婢 姦女 年52 丁卯 主縣居李東陽 …(부모생략)… 率子 加外 年19 庚子 主縣居學生李煦, 戊午自首

S: [蛇山里2-4] 第4戶, 私奴 己男 年43 丙子 主縣居學生李煦 父趙日萬 母私婢芑今, 妻 良女 己粉 年33 丙戌…(부모생략)… 率子 己金 年15 甲辰 主縣居李東陽, 乙卯戶口相準,
加現, 女 己花 年11 戊申 主縣居李東陽, 女 己□ 主縣居學生李煦, 女 十月 年4 乙卯 主縣居學生李煦, 戊午自首

T: [蛇山里1-3] 第3戶, 私奴 周發 年42 丁丑 主淸州幼學林時華 父私奴秋伊 母班婢 己林 今故, 妻 官婢 玉娜, 率子 戒碩 等 別戶縣內去, 乙卯戶口相準,
加現, 率子 巖回 生11 戊申 主陝川曹時亮, 婢 從女 年25 甲午…(부모생략)… 居開寧, 戊午自首

元堂面 蛇山里 1통1호(P)와 2호(Q)는 동일 상전이 자신의 노비들을 나란히 노비호 2개로 세우는 방법을 보여준다. 상전 李旻은 같은 1통내의 제5호 주호이다. 그는 자신의 사노를 제1호의 주호로 세우고, 그를 대신해서 제1통을 관할하는 ‘統首’로 삼았다.²⁹⁾ 그 사노의 아들이 타지의 새로운 상전에게로 귀속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9) ‘五家作統制’는 이미 조선초의 호적작성 방법으로 천명된 바 있지만, 호적대장상에 5호를 하나의 통으로 편제하게 된 것은 1675년의 공포 이후이다. 여기서 각통의 제1호로 등재되는 주호를 통내 5호를 관할하는 통수로 삼도록 했다(“凡二十一條. 一日, 凡民戶隨其隣聚, 不論家口多寡財力貧富, 每五家爲一統, 而擇統內一人爲統首, 以掌統內之事 ……” 『肅宗實錄』 4권, 숙종 1년 9월26일). 그런데 이 통수는 평민[常漢]이지만(지패법과 관련하여 영의정 허적이 논의한 바 있다. “領議政許積言, 紙牌有拘礙之事, 士夫入於常漢統下, 事甚不便. 紙牌第一行, 書某坊某統首, 某卽常漢也” 『肅宗

처는 같은 상전호에 귀속되어 있었다. 더구나 제2호는 그 사노의 母가 주호이며, 형이 술하의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1678년도 호적편제를 통해 큰아들과 혼인한 며느리와 5살의 손녀를 새롭게 등재하게 되었다. 이 며느리도 동일한 상전에 귀속되어 있었다. 이 두 호 구성원의 어미들도 모두 이경의 집안에 귀속되어오던 자들이다. 이경은 노비를 자신이 주호로 있는 호의 率下 노비로 등재할 뿐 아니라 자신의 노비들로 복수의 노비호를 별도로 편성시키고 있었다.

蛇山里 2통1호(R)도 통수의 역할을 하는 사노 호인데, 그 사노의 상전은 진주에 거주하는 자이다. 그런데 그 사노의 처인 사비는 단성에 거주하는 李東陽에 귀속된 비이며 아들은 이동양의 삼촌인 李煦에 귀속된 노이다. 한편, 2통4호(S)는 李煦의 사노와 양녀 부부로 이루어진 호이다. 그들의 자녀들은 ‘一賤則賤’의 원칙에 따라 이후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자식의 일부는 조카 이동양에게 귀속되어 있다. 李東陽은 사산리 1통4호 故學生 李愼의 처 柳氏호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李煦는 李廷蓍의 아들이며 李愼의 동생인데 당시에 사망하였고 남은 가족도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비와 그 소생의 귀속이 형제 사이에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노비 상속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노비귀속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다.

주호의 상전이 단성에 거주하지 않거나 나머지 구성원들이 각자 신분 및 귀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노비호가 성립되는 데에는 단성 내에 거주하는 상전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상전이 신분과 귀속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노비가족의 형성에 대응하여, 더구나 신분과 노비귀속이 변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호적상에 노비호를 편성하는 데에는 신분제도나 호적작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주호로 있는 호적에 신분과 귀속을 달리하는 노비가족 구성원을 ‘奴妻’ ‘婢夫’로 등재하지 않고 별도의 호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호적등재 방법은 상전의 노비경영에 최대의 과제였다.

해당지역 호적에 자신의 호를 등재하고 있는 상전이 노비호 주호의 상전으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은 호구조사시에 그 지역 상전이 노비호의 편제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노비들의 주호로서의 주체성—역할과 의무—이

實錄』 6권, 숙종 3년 3월 1일), 통수는 통내 능력 있는 근실한 자로 통내의 일을 바로 尊位—양반—에게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차정하도록 했다(『正祖實錄』 37권, 정조 17년(1793) 5월 26일, “統首則以當統內勤幹可堪者差定, 以爲檢飭之地. …… 各統內, 或有移來移去之人, 則該統首報于尊位, 卽爲修正統案.”).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

노비의 상전은 자신의 노비를 모두 자신의 호 내에 ‘率下’로 등재하지 않고 일부 노비는 호적 밖에 별도의 호를 세워 ‘外居’토록 하였다. 그러나 ‘솔하노비’와 ‘외거노비’는 호적 등재상의 구분이며 奴婢身貢의 납부방법에 따라서는 ‘仰役奴婢’와 ‘納貢奴婢’로 구분된다—상전 입장에서 ‘使喚奴婢’와 ‘收貢奴婢’라고도 한다—. 양역은 勞役に 동원되어 노동력으로 노비신공을 납부하는 것이며, 납공은 그에 대신하여 현물로 노비신공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상 솔하노비는 모두 양역노비에 해당하며, 외거노비는 대체로 납공노비에 해당하지만, 17세기 말의 호적에는 ‘외거’하면서 ‘양역’하는 노비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동일 행정리에 독립된 노비호를 형성하여 ‘외거’하는 노비들이 현실적으로 노역동원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나 호적상으로는 외거노비 가운데 ‘양역’을 명기하여 구분하고 있다. 호적편제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성현 원당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거하는 양역노비의 사례를 살펴보자.

U: [蛇山里3-4] 第4加戶, 恠同 年31 戊子 縣居朴文吉雇工 父 私奴 玆同 母 私婢 助是, 妻 仰役婢 艾望介 年26 癸巳 主縣居朴文吉, 率女 女玉 年3 丙辰 主上同, 戊午自首

V: [蛇山里4-3] 第3加戶, 仰役私奴 貴生 年42 丁丑 主縣居李旻 父 苐卜 母班婢玆德, 率女 仰役婢 種德 年13 丙午, 女 種丁 年8 辛亥 等 主縣居鄭翼周, 乙卯戶口相準

W: [蛇山里5-4] 第4加戶, 仰役婢 順每 年32 丁亥 主縣居李珍 父私奴恠生 母班婢正每, 戊午自首

X: [蛇山里5-5] 第5加戶, 私奴居寺(士) 恠生 年58 辛酉 主縣居李煦 父李世 母班婢彦花, 妻 私婢 正每 年53 丙寅 主縣居李珍 父班奴連伊 母班婢禮卜, 率子 仰役奴 順上 年21 戊戌 主縣居李珍, 戊午自首

Y: [沙月里1-1] 第1加戶, 仰役單奴 一上 年21 戊戌 主縣居李芳國 父私奴苐上 母婢愛玉, 戊午自首

蛇山里 3통4호(U)는 朴文吉의 雇工이 주호로 있는 호이다. 그의 처는 양역비인데,

딸과 함께 역시 박문길의 노비이다. 이 부부는 박문길이 주호로 있는 3통3호에도 ‘別戶去’로 기재되어 있다. 고공은 솔하노비와 같이 고공주의 호에 기재되어 勞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바로 다음 호에 독립시켜 주호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의 처도 의도적으로 형성한 호에 外居하지만 상전호에 양역하고 있다. 蛇山里 4통3호(V)의 주호는 앞에서 살펴본 1통5호의 주호 李旻의 양역노이다. 그의 딸 種德은 鄭翼周의 양역비다. 정익주는 內元堂里 3통3호의 주호 鄭亨衢인데, 種德은 그의 호에 솔하비로 등재되어 있다.

蛇山里 5통4호(W)와 沙月里 1통1호(Y)는 외거하는 양역노비 가운데에서도 노비 한 명으로 이루어진 단독호의 사례이다. 사산리 5통4호의 양역비 順每는 동리 6통2호의 주호인 李珍의 비이다. 순매의 부모는 X사례로 제시된 蛇山里 5통5호로 별도의 노비호를 세운 사노 養生과 사비 正每 부부이다. 말생은 李煦의 노이고 정매는 李珍의 비이다. 이진은 노비가족을 구성하여 별도의 노비호를 편성하는 데에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매의 아들 순상을 양역노로 기록하고 나아가 정매의 딸은 단독으로 별도의 호를 세우고 역시 양역비로 기록했다. 솔하노비와 다를 바 없이 양역으로 신평납부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노비가족을 둘로 나누어 동리에 각각 별호를 세운 것이다.

沙月里 1통1호의 주호 一上은 李芳國의 ‘양역단노’로 기재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것도 1통의 통수를 맡은 1호의 주호로 등재되었다. ‘單奴’는 귀속 노비를 오직 1명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원칙적으로 양인에게 부과되는 군역이 사노에게도 부과되고 있었지만, 상관의 호내에 ‘牽下奴子’로 양역하는 경우와 이러한 ‘단노’에게는 군역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³⁰⁾ 그러나 이방국은 단노로 양역하는 일상을 호역의 주체로 세울 뿐 아니라, 통수의 역할도 맡도록 했다. 이방국은 바로 다음 호인 1통2호의 주호인 ‘學生 李璣’의 38세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아버지가 죽고 주호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으나 직역은 과거준비를 하는 ‘幼學’이 아니라 ‘校生’으로 존재한다. 가족을 형성하지도 않은 상태로 ‘양역단노’로 별도의 단독호를 세우는 것은 무언가를 위한 상전의 의도성이 강하다. 더구나 이방국의 호에는 많은 솔하노비가 등재되어 있음에도 일상만을 이방국의 ‘양역단노’로 칭하는 점도 의구심을 불러온다.

양역노비가 기재된 노비호들은 대체로 그해의 호적작성에서 호 자체가 새롭게

30) 손병규, 앞의 2002 논문, 383~420면.

등재된 ‘加戶’라는 점이 주목된다. 양역노비로 별호를 세외 외거시키는 호구편성은 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당시의 호구정책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단성의 노비 상전들이 호적작성에 임하여 정부의 호구정책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한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는 무엇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상전의 호에는 솔하의 노비와 단성내 별호를 세워서 나가거나 단성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거노비들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그들은 주호의 개별적인 노비로 기재될 뿐이며 노비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외거하는 양역 노비들은 상전의 호와 떨어져 있지만 주로 동일 행정리 내에 별호를 세워 노역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호적에는 상전과 노비의 개별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노비를 등재하고 있는 반면, 노비가족의 현실적인 존재상황에 대해서는 호구편제의 필요에 따라 비로소 가족관계가 표면화될 뿐임을 간과할 수 없다.

2. 노비호의 제유형과 상전과의 관계

17세기 초 호적까지 노비가족들만으로 구성된 호를 노비호로 규정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17세기 말 호적의 양역하는 외거노비의 존재는 여전히 노비호의 개념을 모호하게 한다. 상전의 노비운영이 노비를 상전호내에 기재할 것인지, 별도로 노비호를 세워 기재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직결되지 않으며, 상전호와 노비호를 분명히 나누는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단지 호적상의 노비호에 대한 형태 분석을 통해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는 있다.

노비호에 대한 분석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호적은 현존하는 노비가족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보여줄 뿐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노비가족 가운데 일부를 호적에 등재할 경우, 개별적인 솔하의 노비로 기록할 것인지 가족을 구성하여 외거노비로 분리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노비호에서 겨우 노비가족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솔하노비라고 해서 가족을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고, 외거노비라고 해서 모두 가족을 이룬 것이라 할 수도 없다—노비 1인이 단독으로 성립한 호는 호구편제상 의도적으로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노비호를 이룬 부부에게 호의 주체로서 대외적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가족으로의 완성도를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사노비가 주호를 담당하게 되는 ‘새로운 원칙’이 발생했다는 관점을 가지고 사노비가 주호인 호에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양인과 사비 부부로 이루어지는 호는 참고 사항이다. 17세기 말의 통계도 앞에서 행한 사례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원당면에 한정한다.

우선 1678년 단성호적 元堂面의 각 호를 대상으로 주호부부의 신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자. 17세기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1606년 단성현호적의 등재상황을 비교하는 표로 제시했다. 부부의 구분은 호의 선두에 기재되는 자의 부부가 양인인가 노비인가에 따라 ‘夫+妻’의 순으로 신분구분을 했다. 부부의 어느 한쪽이 호적에 기록되지 않아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부재’로 처리했다.

〈표 1〉 1606년과 1678년, 주호부부의 신분에 따른 호의 구분과 분포

(단위: 호)

호구분	1606년 호적(단성현)		1678년 호적(원당면)	
	호수	비고	호수	비고
사노+사비	13	3호 복수가족	96	(1호 故夫)
사노+공비			3	
사노+양인	3		14	
사노+(부재)	6	5호 복수가족, 1호 단독호	13	10호 단독호 (2호 ‘鰥夫’, 1호 ‘宦者’)
(부재)+사비	1	1호 복수가족	21	1호 복수가족, 18호 단독호 (직역: 15호 ‘寡女’, 1호 ‘巫女’)
공노+사비	3		1	
양인+사비	4		12	(1호 故夫)
공노+공비	1			
공노+양인	3			
공노+(부재)	3	2호 단독호		
(부재)+공비	4	2호 단독호		
양인+공비	4			
양인+양인	127	(21호 故夫)	119	(23호 故夫)

양인+(부재)	44		11	
(부재)+양인	1	(1호 ‘良女’)	2	(2호 ‘良女’)
계	217		292	

<참고> 1) 1606년 호적은 단성현 전체이며, 1678년 호적은 단성현 원당면에 한정된 통계이다. 호마다 대표자 부부에 대해서 집계했다. 부부구분의 ‘부재’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2) ‘복수가족’은 여러 노비가족이 병기된 경우이며, ‘단독호’는 노비 1인만이 등재된 경우이다.
 3) ‘夫故’는 “故+夫+妻”와 같이 남편이 사망한 기록과 함께 처가 등재된 경우이다. ‘寡女, 良女, 鰥夫, 宦者’ 등은 주호의 직역명이다.

우선 1678년 호적에 노비들로만 구성된 호가 갖는 성격을 17세기 초와 말 사이의 양적, 질적 변화로부터 검토해보자. 1606년 호적에는 단성현 전체 217호 가운데 사노비가 호의 선두에 등록되는 23호(11%)가 발견된다. 그들 사노비 앞에는 모두 상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한 호에 복수의 노비가족이 병기되는 사례가 9호 존재한다. 한편, 1678년 호적에는 단성현 원당면의 292호 가운데 사노비가 호의 선두에 기재되는 경우가 147호(50%)나 되는데, 상전의 인적사항은 그들의 이름 뒤에 기록되거나 누락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복수의 노비가족이 병기되는 사례는 1호에 지나지 않는다.³¹⁾

17세기 초와 말 사이에 사노비가 호의 선두에 기재되는 호의 질적인 변화는 그들의 상전이 그들의 인적사항 앞에 기록되는가, 뒤에 기록되는가의 차이에서만이 아니라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점에도 있다. 1606년 호적에 사노비가 호의 선두에 기재되는 23호의 상전은 대부분 단성 이외의 타지에 거주한다. 상전이 단성에 거주하거나(1호) 거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3호) 경우에도 그들은 당시의 단성호적에서 발견할 수 없다. 반면에 1678년 호적에 사노비가 호의 선두에 기재되는 147호는 이들 상전의 많은 수(101호)가 현재 단성호적에 등재된 자들이다. 단성의 호적편제에 임하는 노비와 상전의 태도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하기로 한다.

31) 沙月里 11통3호의 寡女私婢 每今은 그의 아들 奴 黍難(15세)과 함께 婢 眞玉과 奴 士日 모자를 병기하고 있다. 이들이 매금의 노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每今 모자의 상전은 ‘京居’한다.

1606년 호적에 호의 선두에 등록되는 자의 앞에 다른 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경우는 단지 사노비의 상전이 기록되는 것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元堂里 23번째 호는 “戶, 軍資監參奉故李鎔 妻 梁氏 年50 丁巳生 籍南原 ……”라는 식으로 사망한 남편의 직역과 성명을 명시하고 있다. 1606년 호적에 이러한 사례는 21호나 된다. 미망인이 처가 아니라 쫓인 경우도 죽은 남편을 기재한다. 이러한 호는 주호가 바뀌어야 하지만, 죽은 남편이 당분간 주호의 역할을 유지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온전한 부부가 주호의 위치에 등재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호가 계승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1606년 호적에는 양인의 경우에만 이러한 기재양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이 여성이 단독으로 주호의 위치에 기재되는 사례도 5호 존재한다. 그녀들의 직역명은 ‘官婢’ 3호, ‘校婢’ 1호, ‘良女’ 1호이다. 여성 단독의 주호 기재는 공천에게 흔하게 허락되고 드물게는 양인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말한다.³²⁾

1678년 호적에도 위와 같은 ‘故夫’의 기재양식은 ‘양인+양인’ 부부에서 23호, ‘양인+사비’ 부부에 1호가 확인되는데, ‘사노+사비’ 부부의 경우에도 1호가 발견된다.³³⁾ 사노비 부부도 양인 부부와 같이 주호부부의 등재형태를 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사비의 경우에도 죽은 남편을 주호 위치에 남겨두지 않고 단독으로 등재되는 사례가 21호나 나타난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15호는 ‘寡女’, 1호는 ‘巫女’라는 직역명을 가지고 있다.³⁴⁾ 또한 이들 가운데 2호를 제외한 14호는 사비 혼자 기록되는 단독호이다. 이에 대응하여 사노 홀애비에게 ‘鰥夫’라는 직역명

32) ‘良女’는 처의 직역명으로도 흔하지 않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단지 신분구분이 아니라 여성주호로서의 직역명으로서 의미가 부가된 것이 아닐까 한다. 김경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良女’기재 실태와 성격」 『단성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9, 朝鮮時代史學會, 2004, 161~188면 참조.

33) 蛇山里1-4) 第4戶, 故學生李愼妻 柳氏年44 乙亥 籍瑞山 ……, 子 免講 東陽 年28 辛卯 本陝川 ……; 蛇山里3-5) 第5戶, 故私奴大申妻 私婢 今香 年53 丙寅 主全羅道任實 ……, 子 私奴 李金 年20 己亥 ……; 蛇山里4-4) 第4加戶, 寡女仰役婢 承春 年42 丁丑 主縣居李東陽 ……, 女 班婢 加之介 年9 庚戌 ……; 墨谷里3-4) 第4戶, 鰥夫私奴 日世 年63 丙辰 主縣居李曦 …….

34) ‘寡婦’ ‘寡女’가 여성주호의 직역명으로 기재되는 사실은 김경란, 「단성호적에 나타난 여성주호의 기재실태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94~119면 참조. 주호의 계승 전반에 대한 문제는 김경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主戶有故 기록에 대한 검토-主戶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131, 한국사학회, 2018, 201~244면 참조.

도 나타나는데, 이 또한 사노 단독호이다. 여성이 남편의 인적사항을 전제하지 않고 직역을 가지고 주호로 기재되는 것은 공비만이 아니라 사비에게도 허락되었으며, 특히 단독호로 호를 세우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1678년 호적 원당면 292호의 주호부부에 대해 각각의 신분 분포와 함께 사노비인 경우에 그들의 상전의 거주관계에 따른 분포를 보자. 상전의 신분은 단성현에 거주하는 ‘현거’, 단성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타거’로 나누어 살핀다. 처가 사비인 경우도 그러한 구분을 시도했다.

〈표 2〉 1678년 호적 원당면 주호부부의 신분과 상전의 거주에 따른 분포

(단위: 호)

호구분	양인/공천	사노비			계
		타거	현거	불명	
사노+사비		34 (타20/현14)	61 (타3/현54/불4)	1 (불1)	96
사노+공비		2	1		3
사노+양인		4	10		14
사노+(부재)		2	11		13
(부재)+사비		3	18		21
공노+사비	1(타1)				1
양인+사비	12 (타4/현7/불1)				12
양인+양인	119				119
양인+(부재)	11				11
(부재)+양인	2				2
총합계	145	45	101	1	292

<참고> 부부구분은 위의 표와 같다. ()의 수는 사비인 처의 수이다. ‘타’는 상전이 단성이외의 타현에 거주, ‘현’은 단성에 현거, ‘불’은 상전의 거주관계가 불명한 경우이다.

사노비가 주호인 147호 가운데 주호의 상전이 단성현에 거주하는 ‘현거’의 경우가 101호, 사노비 주호 전체의 69%에 이른다. 그 비율은 주호부부가 사노+사비인 경우 (96호, 그 가운데 상전이 ‘현거’인 경우는 61호, 64%)보다 사노+양인 부부이거나

사노와 사비 각각의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현거’가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 상전이 현거하는 경우의 사노가 양인여성과 혼인할 확률이 높다가보다는 상관이 타지에 거주하는 사노가 호적에 사노를 표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나 현거하는 상전이 호적에 사노비 귀속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석된다. 사노, 사비를 단독호로 편성하여 호를 세우는 데에도 호충 충당을 위한 상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양인여성과 혼인한 사노가 독립호로 편성되더라도 노비신공 징수와 그것을 넘어서는 인신적 예속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주호의 처가 사비인 경우에 그 상전의 거주에 따른 분포를 보자. 우선 사노+사비로 구성되는 노비호의 경우, 주호인 사노의 상전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의 처는 동일한 상전을 두거나 상전이 단성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34호 가운데 20호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처의 상전이 단성에 현거하는 경우는 14호로 그보다 적다. 한편 상전이 현거하는 사노의 처는 상전이 같거나 단성에 현거하는 경우가 61호 가운데 54호가 확인된다. 상전이 타거하는 경우는 3호에 지나지 않는다. 사노+사비로 구성되는 노비호의 대다수가 현거하는 상전에 귀속됨을 분명히 하면서 그의 영향력 하에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양인+사비 부부의 경우, 처인 사비의 상전이 현거하는 호가 12호 가운데 7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소위 ‘婢夫’가 처의 상전호에 기재되지 않고 독립호를 편성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호에도 현거하는 상전들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당면 292호 가운데 각 統의 제1호로 등재되는 주호들의 신분과 상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당시 호적에는 제1호의 주호가 각 통 統首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675년에 5호를 1통으로 구성하는 ‘五家作統制’가 재천명되면서 통수는 지역내 지배적 계층이 담당할 것이 권유되었다. 그러나 다음 식년인 1678년도 호적작성에서 그러한 조정의 권유가 관철되지는 못한 듯하다.

양인이 통수를 맡은 주호는 18호, 전체 통수 가운데 31%에 머문다. 전체 주호 가운데 양인의 비율 49%에 비해 적다. 게다가 이 가운데에서도 소위 ‘양반’으로 판단되는 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노가 주호인 노비호 40개가 제1호로 편제되어 호적상 통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등재되었다. 단지 통수로 차정된 사노의 상전이 현거하는 경우가 24호로 과반수(60%)를 차지하지만, 노비호 전체에서 상전이 현거하는 사노비의 비율(69%)을 생각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다만 상전이 타거하는 사노 16호의 처 가운데에는 상전이 현거하는 경우가 9호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표 3〉 제1호 주호(통수)의 신분과 상전 거주에 따른 분포

(단위: 호)

부부구분	양인/공천	사노비		계
		타거	현거	
사노+사비		16(타7/현9)	19(타2/현15/불명2)	35
사노+양녀			4	4
사노+불명			1	1
공노+사비	1(타1)			1
양인+양녀	14			14
양인+사비	2(타1/현1)			2
양인+불명	2			2
계	19	16	24	59

<참고> 부부구분과 ()의 구분 방법은 위의 표와 같다.

단성현 원당면에서는 양반을 비롯한 양인들이 통수의 역할을 외면하고 가능한 한 사노를 그 역할의 담당자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주로 양반층에 해당하는 상전들은 자신의 노비로 제1호의 주호부부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대신케 했던 것이다. 이 점은 사노주호에게 군역이 부과되는 현상에서도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 군역이 부과된 사노 주호의 분포

(단위: 호)

부부구분	타거	현거	불명	계
사노+사비	16	5	1	22
사노+양녀	3	5		8
계	19	10	1	30

<참고> 상전의 거주 구분은 위의 표와 같다.

17세기 말의 군역운영 상황에서 사노에게도 중앙군역의 일부와 주로 지방군사기관에 소속되는 지방군역이 일부 부과되고 있었다. 1678년 단성현호적 원당면에서 노비호의 주호인 사노에게 군역이 부과된 경우는 노비호 147호 가운데 30호(20%)이다.

그것은 사노+사비 부부 96호 가운데 22호(23%), 사노+양녀 부부 14호 가운데 8호(57%)로, 후자에 부과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상전이 타지에 거주하는 사노 주호 45호 가운데 19호(42%), 상전이 단성에 현거하는 사노 주호 101호 가운데 10호(10%)로, 전자에 부과율이 높다. 사노 주호에게 군역이 부과될 때는 사노+양녀 부부인 경우와 상전이 타거하는 경우의 사노에게 우선적이었다는 말이다. 이 두 경우의 사노는 상전과의 지배예속 관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이해된다. 군역부담을 감수하면서 노비신공을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성현에 거주하는 상전의 일부는 자신의 사노를 노비호의 주호로만이 아니라 군역 부담자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주도의 지방공동체 형성과 자율적 사회운영의 장려가 의도대로 지방사회에 관철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호적작성 과정에서 현거하는 상전이 노비호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호를 단위로 하는 제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하는 데에는 무언가의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이다. 노비 상전들의 공문서인 호적의 기재를 통해 노비귀속 관계를 견지하려 할 뿐 아니라, 재정, 군역을 위시한 지방통치업무와 관련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견지하려는 노력의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다.

IV. 전망: 노비호 성립의 원인과 방향성

‘立戶充役’이라는 호구성 원리에 의거하여 호의 대표자 主戶는 양인 직역자로 이루어진다. 17세기 초까지의 호적장부에 사노비들만으로 구성된 호가 존재하는데, 모두 ‘上典+노비’의 형태로 등재되었다. 직역자인 그 상전은 해당 군현의 호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사노비는 주호의 술하인으로 기재되어 주호로서 독자적인 호를 세우지 못하고, 상전은 거주 지역에 복수의 호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호편제 원칙인 듯하다. 주호는 직역자로서 국역 수행의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직역자호에 귀속된 노비가 주호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말의 호적대장에는 양인과 공천 이외에도 사노비가 호의 주호로 기재되는, 그야말로 ‘노비호’라 할 수 있는 호가 전체 호의 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호는 ‘노비+상전’의 형태로 등재된다. 더구나 사노비 주호의 상전 가운데 많은 자들

이 해당지역 호적에 별도로 호를 세워 주호로 등재되어 있다. 상전이 한 지역, 한 시기의 호적에 자신의 호와 그의 외거하는 노비로 구성되는 호를 복수로 등재한 셈이다. 노비호의 주호는 상전과 노비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비호에 대한 戶役 부담에 단성에 거주하는 상전이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1678년도 단성현호적대장 원당면의 말미에 호적작성을 주도한 ‘戶籍都監’으로 “都尹 幼學 權大有”와 “副尹 業儒 李周英”이 기록되어 있다.³⁵⁾ 권대유는 당시 원당면 文法里 6통4호의 주호이며, 이주영은 墨谷里 1통2호 주호인 李廷實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권대유와 이주영은 원당면에 세거를 시작한 안동권씨와 합천이씨 가계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단성현 鄉案에도 등재되어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인물로 인정받는 자들이다.³⁶⁾ 권대유는 특히 단성호적에 누구보다 많은 수의 노비를 등재한다.³⁷⁾ 호적 작성에 임하여 당지역의 지배층들과 합의하에 노비호의 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여를 했을 것이다. 노비호는 지배적 세력들이 호적작성을 주도하고 지방통치 및 재정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다.

17세기 말에 이러한 노비호가 다량으로 생성된 재정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노비들만으로 세워진 호라 하더라도 호적대장상에 ‘立戶’를 한 이상, 호를 단위로 하는 공적 부담이 부과되었다. 17세기 말의 호구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호구를 호적대장에 파악하여 전란으로부터의 회복을 꾀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호적에 등재된 호에 그러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를 당시의 호구정책만이 아니라 노비와 상전 양쪽의 필요성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양인에게 부과되는 국역을 피하여 노비를 선택한 경우가 많음을 염두에 두면서, 호적상에 노비만으로 구성된 호의 노비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상전호에 솔하노비로 등재되는 자들에 비해 귀속성이 약했다고 여겨진다. 17세기 초와 같이, 상전이 외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식년의 호적에 호를 세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7세기 말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에 대해서도 귀속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상전은 자신의 노비 이름으로 호를 세우도록 하여 지역에 할당된 호구총수를 채워 부담을 분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담을 전부 노비에게

35)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1678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호적DB.

36) 『丹城鄉案』, 단성향교 소장.

37) 술거, 외거를 합하여 당시 현존하는 100명의 노비를 소유한다. 손병규, 앞의 2004 논문 참조.

지을 경우, 노비신공을 온전히 수납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귀속성이 약해진 노비나 그 소생에 대한 귀속을 공적 문서상에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17세기 호적대장에 호를 대표하는 주호를 ‘상전+노비’ 형태로 등재하든 ‘노비+주+상전’ 형태로 등재하든 양자 사이에는 공통된 점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호들이 호마다 각각의 고유한 주호를 설정하는 호적작성 원칙에 서있다는 것이다. 호에는 상전과 노비가 결합된 형태로 개별호의 고유한 이름, 즉 ‘戶名’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호의 대표자는 양인 직역자에 한정되는 원칙도 직역자인 상전과 결합한 ‘호명’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호명이 1720년경에 작성된 ‘庚子量案’의 토지소유자를 기재하는 방법에도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개별 필지의 토지는 ‘상전+노비’ 형태나 상전이 생략되고 노비명만으로 소유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토지는 대부분 노비의 상전이 소유한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호마다 통호수의 주소와 함께 고유의 ‘호명’이 설정되듯이, 개별 필지의 토지마다 지번과 함께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식으로 기재되었다. 입호충역의 원칙에 따르면 田主는 양인 직역자 주호에 한정된다. 하지만 노비명을 빌려 토지소유자를 표시함으로써 양안상에 토지소유규모의 불평등을 가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토지소유규모가 하향평준화하고 토지소유권이 강화되면서 조세징수관계를 개별 필지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18세기를 통해 호적상 노비호로 편성되는 외거노비수가 급격히 감소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³⁸⁾ 1730년경에 공표된 ‘良妻所生從母法’ 이전까지 상전호에 솔하로 등재되는 노비는 증가했음에 반해 외거노비는 이미 급감하고 있었다. 17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양인군역자의 확보정책에 따라 노비의 귀속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향으로 보인다. 자신의 노비로 호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솔하의 노비로 귀속을 분명히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후로 노비호는 급감하여 19세기에 거의 사라진다. 상전의 노비소유규모가 하향평준화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노비

38) 단성호적대장에서 집계해보면, 17세기 말에 50%를 차지하던 노비는 19세기 초에 18%에 이르기까지 감소했는데, 노비 안에서도 외거노비의 비율은 17세기 말의 55%로부터 19세기 초에 4%로 더욱 급격하게 감소했다. 노비호는 17세기 말에 53%에서 19세기 초의 3%로 감소했다.

호 자체가 ‘입호충역’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호적에 등재되는 양인호들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에서 호편제상 호의 균등성이 제고될 수 있었다.

호적에 노비호를 세우는 과정에서 조선왕조의 良賤制는 국역체계의 관철 과정에 부응하여 민에 의해서 선택되고 이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양인으로의 무거운 國役을 피하거나 생계의 유지를 위해 노비로의 신역을 선택하는 한편, 역부담의 신분적 격차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국역을 선택하는 등의 자발성이 그것이다. 유리한 상전을 선택하거나—흔히 ‘도망’이라 표현되기도 하지만—상전에 의지하기보다 양인으로 자립하여 국가적 보장/구휼에 의지하고자 하는 선택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호적상의 노비 등재방법을 둘러싼 상전들의 선택이 작동하면서 노비호의 생성과 소멸이 발생한 것이다.

조선왕조는 인민통치를 위한 양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역체계의 관철을 지향해왔다. 호구성의 방법이 변화하지만, 호적에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어가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국역체계의 관철이란 궁극적으로는 모든 호를 국역운영의 대상인 양인 직역자의 호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⁹⁾ 호의 부담을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균일한 호를 구성하려는 호구정책상의 의지는 이후 19세기의 호적대장에 관철되었다.⁴⁰⁾ 다만, 지역의 호구총수를 채우기 위해 호적상의 호를 균일하게 편제하는 방법은 지방의 호구정책에 따라 다양했던 것 같다. 19세기 제주의 호적이 호역부담을 호마다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호등제를 시행했지만,⁴¹⁾ 호적에 균등한 호를 등재

39) 호적대장 말미에 본문의 호구등재를 남녀, 직역, 신분별로 집계하는 ‘都已上’ 자료 가운데 독특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 여기에 소개해둔다(「상트 오티리엔수도원 소장 병풍 배접지」, 국외소재문화재단 소개). 이 ‘도이상’ 자료는 개인을 남녀, 직역과 신분으로 개별적인 통계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호를 중심으로 가족과 戚人, 술하노비-양역노비-, 고공 등의 호 구성원별로 집계를 제시한다. 이 자료는 단성현보다 약간 큰 지역의 17세기 말 자료로 판단되는데(“남 5,537명, 양역노 655명, 사노 1,697명”),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17세기 말의 호적작성에 이미 호의 구조까지 일률적인 양식으로 정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40) 19세기 호적은 호내에 노비를 한둘 기재하는 ‘幼學戶’가 증가하여 일반화되어 감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이다(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률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32-65면; 송양섭, 앞의 2004 논문 참조). 이것은 『經國大典』 禮典의 戶口式에 예시된 관직자호를 표본으로 정형화된 결과이다.

41) 정진영, 앞의 2002 논문, 227~262면; 허원영, 「19세기 후반 濟州 戶籍中草에 등재된 戶의 경제적 성격-濟州島 大靜縣 沙溪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215~252면.

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호등제를 적용하여 현실적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차등성이 고려되기도 했다.⁴²⁾

투고일: 2020.04.27

심사일: 2020.06.03

게재확정일: 2020.06.17

42)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호구차정 원리·언양 가좌성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주최 학술회의 “戶籍 작성의 원리와 사회현상” 발표문, 2020.02.14.

참고문헌

『高麗史』

『太祖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和寧府戶籍(盧明鎬 등저,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2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수록)

『慶尙道山陰帳籍』(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호적DB)

『丹城鄉案』

김건태, 「朝鮮後期 戶의 構造와 戶政運營-丹城戶籍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_____, 「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 戶籍大帳의 編制方式」,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_____, 「朝鮮後期 私奴婢 파악방식」, 『歷史學報』 181, 역사학회, 2004

_____,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의 성격」, 『韓國史研究』 132, 한국사학회, 2006

_____,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韓國史研究』 144, 韓國史研究會, 2009

_____,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호구차정 원리-언양 가좌성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주최 학술회의의 “戶籍 작성의 원리와 사회현상” 발표문, 2020.02.14

김경란, 「단성호적에 나타난 여성주호의 기재실태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학회, 2001

_____,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良女’기재실태와 성격-『단성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9, 朝鮮時代史學會, 2004

_____,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主戶有故 기록에 대한 검토-主戶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131, 한국사학회, 2018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軍史』 39, 국방군사연구소, 1999

_____, 「조선후기 경주옥산서원의 노비경영」, 泰東古典研究 17,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00

_____,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파악과 운영」, 『韓國史學報』 13, 고려사학회, 2002

_____, 「17·18세기 호적대장의 私奴婢 기재 실태-경상도 단성현 권대유家 노비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_____, 「18세기 말의 지역별 ‘戶口總數’, 그 통계적 함의」, 『사림』 38, 수선사학회, 2011

송양섭, 「19세기 유학호의 구조와 성격-『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률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 이상국, 「고려후기 ‘本主’의 의미와 立戶充役」,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 _____, 「高麗時代 軍役差定과 軍人田」, 『한국중세사연구』 15, 한국중세사학회, 2003
- 이영훈, 「量案의 성격에 관한 再檢討-慶尙道 醴泉郡 庚子量案의 事例 分析」, 『경제사학』 8, 한국경제사학회, 1984
- 이중서, 「高麗末 和寧府戶籍의 作成原則과 記載內容-同居狀況과의 關聯性を 중심으로」, 『震檀學報』 95, 진단학회, 2003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_____, 「조선후기 호적 ‘戶’의 編制와 성격-〈제주 대정현 하모슬피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허원영, 「19세기 후반 濟州 戶籍中草에 등재된 戶의 경제적 성격-濟州島 大靜縣 沙溪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 吉田滋一, 「中國家父長制論批判序說」, 『中國專制國家社會統合-中國史像再構成 II』, 中國史研究會編, 文理閣, 1990
- 井上和枝, 「李朝後期慶尙道丹城縣の社會變動-學習院大學藏丹城縣戶籍大帳研究」, 『學習院史學』 23, 學習院大學, 1985

The Meaning of the Household with Nobi Head in the Household Register of the 17th Century Korea from National Financial Perspective

Son, Byung-giu

The household registers compiled from the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ies registered a large number of nobi household heads. This study traces the process of composing the household with nobi heads until the late 17th century.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reason why the household registers needed to record households of nobi heads.

As the person in charge of national taxation and corvée for the household, the household head used to be chosen among free-born in principle, having an occupational record. The households of nobi were registered in the form of 'owner + nobi' in household registers until the early 17th century. This form tells us that the nobi owner was the real head of the household, even it had a nobi head. However, the household registers of the late 17th century used to record the nobi instead of the owner of the nobi, and some households did not report the owner. As a result, we can find not only the household of the owners of nobi but also several households of his nobi in a register.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in the registers in the late 17th century increased due to th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intended to find more households as possible. The total amount of national taxation and corvée, which was imposed on a county, was allocated to sub-counties by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This study supposes that composing and registering households with nobi heads were invented by nobi owners as a means of distributing national taxation in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apacity of each household in a sub-county. A similar feature was reported from the land register compiled around 1720 which recorded the information of the landowner in the form of 'owner + nobi' or nobi alone to represent the real

landowner.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finance, these recording patterns were deeply related to the process and reason for increasing households with nobi heads in the household register in the 17th century.

Key Words : household register, household with nobi head, nobi owner, tax and corvée system, national finance

